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5. 10. 10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9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9월 30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'95. 10. 10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담당관 김 진 성)

가. 제 안 이 유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(법률 제4.951호, '95. 7.26)제24조

(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) 및 동법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(이하"교육위원"이라 한다)의 직무상 사망,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
- 위원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
- 위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, 본 조례내용은

첫째, 보상금 지급대상은

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,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, 직무상 장애를 입었을때,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고

둘째, 보상금 지급 기준은

- ①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
- 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,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고
- ③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, 다만, 2항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등 2항 3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교육위원이 1항 2항에 해당될 때 1항 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항 3항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토록 하였으며

셋째, 위원상해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과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두어 위원장은 1인, 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감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위원의 공적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질병, 상해, 장애, 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,

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의 규정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조례안 제12조2항 규정에 있어 위원장 사고시, 위원장이 사망 또는 지명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며 제7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: 없 음
5. 토론요지: 없 음
6. 수정안 요지: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대행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.
7. 심사결과: 조례안 제12조 2항 규정중 "지명하는"을 "지명한"으로 자구수정의결하고,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함
8. 조 례 안: 별 첨
9. 수정안조문대비표: 별 첨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5. 10. 10

제안자 : 이길하의원외 6인

1. 수정이유

안 제12조 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에 있어

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"지명하는"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를
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"지명한"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
자구를 수정하여 위원장의 사고시 직무대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 골자

자구수정 " 지명하는" ————— "지명한" (안 제12조 2항)